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3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19년 11월 22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I. 수정이유

-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II. 주요내용

-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안 제8조의2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교육감은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신 설>	<p>제8조의2(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① 교육감은 학교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</p>	<p>제8조의2(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교육감은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8조의3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학교협동조합 신규 설립·운영 컨설팅 및 상담에 관한 사항
2. 학교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3. 학교협동조합 교육·연수, 네트워크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
4. 교육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·운영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의4(센터의 예산지원)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신 설>	<p><u>제8조의2(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고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교육감은 「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</u></p>
<신 설>	<p><u>제8조의3(센터의 기능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학교협동조합 신규 설립·운영 컨설팅 및 상담에 관한 사항</u> <u>2. 학교협동조합 관련 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3. 학교협동조합 교육·연수, 네트워크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</u> <u>4. 교육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5.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
<신 설>	<p><u>제8조의4(센터의 예산지원)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
[붙임]

학교협동조합 현황

연번	급별	설립별	지원청	학교명	협동조합명	조합사업	조합원수 전체(학생)	설립 인가
1	중	공립	남부	영림중	영림중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163 (79)	13.09.03.
2	고	공립	남부	독산고	독산누리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166 (83)	14.08.19.
3	고	공립	성북강북	삼각산고	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246 (139)	15.02.25.
4	고	공립	강동송파	선사고	선사고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195 (96)	15.10.02.
5	고	공립	동작관악	삼성고	삼성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206 (101)	15.08.25.
6	중	공립	동작관악	국사봉중	국사봉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172 (67)	16.02.02.
7	고	공립	서부	가재울고	가재울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105 (68)	16.02.15.
8	초	공립	북부	월천초	월천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	방과후	36 (0)	16.03.11.
9	초	공립	강서양천	양화초	모기동마을학교 사회적협동조합	방과후	30 (0)	16.06.27.
10	고	사립	성북강북	계성고	계성셋별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130 (75)	16.07.28.
11	중	공립	성북강북	길음중	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161 (87)	16.08.26.
12	초	공립	강동송파	신천초	신천 사회적협동조합	방과후	54 (0)	16.09.07.
13	중	공립	남부	한울중	한울타리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94 (48)	16.09.20.
14	초	공립	성동광진	금복초	금복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	방과후	204 (0)	16.10.24.
15	고	공립	성동광진	성수공고	성수공업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	진로형	15 (10)	17.03.28
16	지역 교육 청	공립	서부	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 터	누림 사회적협동조합	진로형	16 (0)	17.04.12
17	고	사립	동작관악	광신정보산업고	광신정산고 사회적협동조합	진로형 (매점)	45 (17)	17.08.23
18	초	공립	남부	천왕초	함께배움 사회적협동조합	방과후	44 (21)	17.10.26
19	특수	사립	강남서초	밀알학교	밀알학교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60 (34)	17.11.27
20	초	공립	중부	남산초	서울남산초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24 (0)	18.01.10
21	고	사립	중부	성심여중·고	성심학교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175 (102)	18.01.24.
22	초	공립	강동송파	성일초	성일 사회적협동조합	방과후	25 (13)	18.03.30.

23	고	공립	성동광진	금호고	금호고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78 (47)	18.04.25.
24	고	사립	서부	선일이비즈니스 고	무한창업 선일 이비즈니스고등학 교 사회적협동조합	진로형 (e-biz)	43 (34)	18.09.03.
25	고	공립	남부	구로고	구로고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42 (22)	19.04.05.
26	고	공립	성동광진	도선고	도선고 사회적협동조합	매점	62 (30)	19.07.18.
계		공립 21 사립 5		초7 중4 고13 지역청·특수 2			2,591 (1,173)	